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127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대행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67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협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C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7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 피고 B의 경우)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협회(이하 편의상 ‘피고 협회’라고 한다)에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지난 날(☞ 피고 협회의 경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3~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 충남 태안군 D 임야 8,527㎡ >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3. 9. 5.~2013. 9. 30. E에게 3,667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에게 그 돈이 전달되었지만 원고에게 위 임야의 공유지분이나 위 임야 중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B이 2016. 8. 하순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 차용증 (☞ 갑 5)>을 만들어 건넨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6. 9. 7. 원고와 차용원금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따로 함께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록 ‘피고 B이 E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67만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 B이 E을 통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3,667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설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편취한 금액을 배상하라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듯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차용증(☞ 거기에는 “E 이가 A한테 입금받아서 B에게 입금시킨 것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이나 집행증서에 표시된 법률행위 또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셈이 되는 돈을 정산하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중 3,667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20.(☞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먼저, “(위) 차용증은 원고 A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 A가 2020. 9. 15. 피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2016. 8. 22.자 차용증은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써 위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가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B은 다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동안 변제한 금액은 5,765,380원으로서, ... 피고(B)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 잔액은 ... 1,234,620원”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다투지만,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동안 633만원(= 4,300만원 - 3,667만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갚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설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내세우는 위 일부 변제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2020. 6.경 맺은 공제약정에 따라 피고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공동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나. 그러나 피고 협회의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뿐인데,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공제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